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수청장 추가 등〉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741호)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353호)

2026.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수청장 추가 등 ..	3

I. 제안경위

1. 황운하의원안

가.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8. 24.

다. 회 부 일 : 2026. 8. 25.

2. 박상혁의원안

가.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9. 11.

다. 회 부 일 : 2026. 9.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황운하의원안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

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2. 박상혁의원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수청장 추가 등

☐ 개정안은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유통과 관련된 불법광고
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이하 ‘중수청장’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임.

○ 한편, 황운하의원안은 요청 주체에서 ‘검찰총장’¹⁾을 삭제하고 있으나, 박상혁의원안은 ‘검찰총장’을 존치하고 있음(안 제6조의2).

현행	황운하의원안	박상혁의원안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① <u>검찰총장</u> ,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① <u>중대범죄수사청장</u> -----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① <u>검찰총장</u> , <u>중대범죄수사청장</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5호2)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3)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 1) 「공소청법」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한편, 기존에 검사가 모두 담당하였던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사의 조직과 직무(공소 제기)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법」으로, 중대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함)」로 이관되었으며, 위 법률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중수청법」 제4조제1호4)는 중수청의 직무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5)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사 업무의 이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법 광고 관련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선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 개정 「공소청법」 제4조6)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과정(제2호)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과정(제3호)에서 검사가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개정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7)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2026년 12월 31일경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6)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공소청법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 또한 현행법 제6조의2의 신설 취지(통장 등의 불법 양도·양수 등 범죄 근절)를 고려할 때, 중수청장·검찰총장 모두에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중수청장·검찰총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4